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 김종욱 의원 외 78명 발의 】

의안번호 1576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종욱 의원 외 78명
- 나. 제안일 : 2016. 12. 16.
- 다. 회부일 : 2016. 12.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탄핵소추의결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66%)를 훨씬 넘는 234명(78%)이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함.
- 같은 날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주 연속 평균 91%이상을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압도적으로 피청구인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남.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위반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역행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헌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9일, 제346회 제18차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

안」이 재적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헌법질서 수호,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도록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판단 하에 제346회 제18차 국회 본회의(2016.12.9.)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음.
- 이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38조),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23조), 그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음.

<그림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 출처 : 뉴시스(2016-12-09)

-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사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제67조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제66조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제78조), 평등원칙(제11조), 재산권 보장(제23조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제119조제1항), 언론의 자유(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함.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 사실이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 이뤄지는 한편,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각종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심리가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과 그 주변인(이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 의혹,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관료의 비리 연루 의혹,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2016.12.11.)에 따르면,
-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안중범(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정호성(전 부속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전 경제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불기소 기소됐음.
- 검찰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음.
- 이에 본 결의안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안중범·정호성·김종·조원동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사실상 ‘공범’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와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sup>1)</sup>와 특별검사<sup>2)</sup>의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인용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함으로써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3 종합 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한 국정운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등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 등 사회적 갈등이 계속될 것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6.11.17.)해 현재 국정조사가 진행 중임.

2)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2016.11.23.)되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